

【 9 】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4.

제출자 : 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거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장학생 자격요건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상 중 저소득세대 또한 판단기준이 모호한 관계로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차상위계층으로 대상을 변경하는 등 자격 요건 등을 정비·구체화 하여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에 맞추어 위원회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 가. 장학생의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 산정 일을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하고, 중학교 의무 교육시행에 따라 자격요건에서 중학생을 삭제함. (안 제2조 제1항)
- 나. 장학생 자격요건 중 학업성적을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에서 재적 학년 바로 전학년으로 규정함. (안 제2조 제1항)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세대를 차상위계층으로 변경 규정함. (안 제2조 제1항 제2호)
- 라. 예·체능 특기자의 장학생 자격요건을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성적으로 구체화함 (안 제2조 제1항 제4호)
- 마. 중학교 의무교육시행에 따른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을 삭제함. (안 제4조 제2항)
- 바. 양주시향토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향토장학금 심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조례에서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사.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
(안 제7조)

양주시향토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중 “「양주시향토장학금지급조례」”를 “「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양주시향토장학금”을 “양주시 향토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를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 · 고등학생 및 2년제 대학 이상의 대학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2년제 대학 이상의 재학생”으로 하며, 동항 중 “다만, 제1호의 경우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중학교 신입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동조 제1항 제1호 중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신입생의 경우 입학 바로 전학기)”를 “재적학년 바로 전학년(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졸업학년)”으로 하고,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저소득 세대(최근 3월동안 가계 월평균 소득이 80만원이하인 세대)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신입생의 경우 입학 바로 전학기)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년(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졸업학년)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하며,

제3호 중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신입생의 경우 입학 바로 전학기)의

평균 점수가 60점이상”을 “재적학년 바로 전학년(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졸업학년)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으로 하고,

제4호 중 “도 단위이상의 예·체능대회에서 3위이내로 입상한 자”를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도 단위이상의 예·체능대회에서 3위이내로 입상한 자”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양주시향토장학금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향토장학금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중학생은 연 30만원”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시장은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위원 4인과 위촉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총무과장, 생활민원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관내 사정이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와 교직자 중 3인을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시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학금 담당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액 결정
3. 장학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5.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양주시 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내지 제10조를 제8조 내지 11조로 하고,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양주시 향토장학금지급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면학을 장려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u>양주시 향토장학금</u>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장학생의 자격요건)</p> <p>① <u>장학생의 자격은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및 2년제 대학이상의 대학생으로 한다.</u> 다만, 제1호의 경우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중학교 신입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u>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신입생의 경우 입학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90 점이상 또는 대학생은 A학점이상인 자</u></p> <p>2.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저소득세대(최근 3월 동안 가계 월평균 소득이 80만원이하인 세대)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신입생의 경우 입학 바로 전학기)의 평균 점수가 70점이상 또는 대학생은 B학점이상인 자</u></p>	<p><u>양주시 향토장학금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u>양주시 향토장학금</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요건)</p> <p>① <u>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u> <u>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2년제 대학 이상의 재학생으로 한다.</u></p> <p>1. <u>재적학년 바로 전학년(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졸업학년)</u></p> <p>2.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년(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졸업학년)의 평균 점수가 70점이상</u></p>

현 행	개 정 안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로서 <u>재적학년</u> 바로 전학기(신입생의 경우 입학 바로 전학기)의 평균 점수가 60점이상 또는 대학생은 C학점이상인 자	3. <u>재적학년</u> 바로 전학년(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 졸업학년)의 평균 점수가 60점이상
4. <u>도 단위이상의 예·체능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자</u>	4. <u>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도 단위이상의 예·체능대회에서 3위이내로 입상한 자</u>
제3조(장학생의 선발)	제3조(장학생의 선발)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장학생신청자중에서 매년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u>양주시향토장학금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u>양주시 향토장학금 심의위원회</u>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 <u>중학생은 연 30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등록금 전액, 대학생은 연간 등록금의 80퍼센트이하로 한다.</u>	② <u>고등학생은 연간 등록금 전액, 대학생은 연간 등록금의 80퍼센트이하로 한다.</u>
제5조(지급정지)	제5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u>다음 각 호의 1에</u>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구성)</p> <p><u>시장은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신설)</p>	<p>제6조(위원회의 구성)</p> <p>① <u>시장은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위원 4인과 위촉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총무과장, 생활민원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관내 사정이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와 교직자 중 3인을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③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시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학금 담당자가 된다.</u></p> <p>④ <u>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7조(위원회의 기능)</p> <p>① <u>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 심사에 관한 사항</u> 2. <u>장학금 지급액 결정</u> 3. <u>장학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u> 4. <u>기금운영의 성과분석</u> 5. <u>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u> <p>② <u>제1항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양주시 기금 운용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u></p>

현 행	개 정 안
<u>제7조</u> (기금의 조성) (생략)	<u>제8조</u> (기금의 조성) (현행 제7조와 같음)
<u>제8조</u> (기금의 예치) (생략)	<u>제9조</u> (기금의 예치) (현행 제8조와 같음)
<u>제9조</u> (기금의 운용관리) (생략)	<u>제10조</u> (기금의 운용관리) (현행 제9조와 같음)
<u>제10조</u> (기금 관리공무원) (생략)	<u>제11조</u> (기금 관리공무원) (현행 제10조와 같음)
<u>제11조</u> (결산보고서 작성 등)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